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5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상휘·박덕흠·박성민

구자근 • 백종헌 • 최은석

박성훈 • 권영세 • 서천호

임이자 • 배준영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등 증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감정인·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증인의 보호) ① ~ ④	제9조(증인의 보호)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
	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
	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증인
	·감정인·참고인의 동의를 받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